

[별표]

인구감소대응 및 시책 지원 세부사업 및 지원기준(제2조 관련)

분야	세 부 사 업 명 (소 관 부 서)	지 원 기 준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임신·출산 지원	임 산 부 철 분 제 (건 강 증 진 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또는 보건지소)에 등록한 임산부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최대 6개월분) 지급
	태아염색체검사비 (건 강 증 진 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또는 보건 지소)에 등록한 임산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 질환, 태아의 염색체 이상 등으로 태아 염색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태아 염색체검사를 실시한 임신부	최대 60만원 이내
	임 신 부 가 사 돌 봄 서비스 지원 사업 (지역활력추진단)	신청일 기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부 등록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임신부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료 최대 567천원 지원
	산 후 조 리 비 (건 강 증 진 과)	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중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부모 모두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 산후조리원 이용시 최대 100만원 · 산후조리원 미이용시 최대 50만원 ※ 다태아 출산인 경우 1인 초과 인원에 대하여 50% 가산 지급
	산 모 · 신 생 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 인 부 담 금 (건 강 증 진 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하여 한부모와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유형 ‘표준’ 신청 시 ‘본인부담금’ 전액 - 서비스 유형 ‘단축’ 신청 시 ‘단축’ 금액 - 서비스 유형 ‘연장’ 신청 시 ‘표준’ 금액
	출 산 장 려 금 (지역활력추진단)	가. 신생아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재혼가정의 경우 부와 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 출생아 모두 출산축하금(신청다음달), 돌축하금(12회차) 지급 - 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 각 150만원· 분할지급

분야	세 부 사 업 명 (소 관 부 서)	지 원 기 준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를 인정해 지원한다. 다.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이력이 없어야 한다	<table><tr><td>자녀수</td><td>지급액</td><td>지원내용</td></tr><tr><td>첫 째 아</td><td>440만원</td><td>신청 다음달부터 월10만원 24개월</td></tr><tr><td>둘 째 아</td><td>1,100만원</td><td>신청 다음달부터 월15만원 60개월</td></tr><tr><td>셋 째 아</td><td>1,700만원</td><td>신청 다음달부터 월25만원 60개월</td></tr><tr><td>넷째아이이상</td><td>3,000만원</td><td>신청 다음달부터 월45만원 60개월</td></tr></table>		자녀수	지급액	지원내용	첫 째 아	44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월10만원 24개월	둘 째 아	1,10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월15만원 60개월	셋 째 아	1,70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월25만원 60개월	넷째아이이상	3,00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월45만원 60개월
	자녀수	지급액	지원내용																
	첫 째 아	44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월10만원 24개월																
	둘 째 아	1,10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월15만원 60개월																
	셋 째 아	1,70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월25만원 60개월																
넷째아이이상	3,00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월45만원 60개월																	
	출 산 축 하 용 품 (지역활력추진단)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동일함	5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쌍 둥 이 이 상 등 출 산 축 하 금 (지역활력추진단)	신생아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1회에 한하여(신청월 다음달에)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다둥이 안전보험 (지역활력추진단)	가. <u>둘째아이 이상의</u>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u>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3세이하)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u> 되고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 아이(3세 이전)이상 자녀를 둔 사람	6세(생후 72개월)미만 취학 전까지 월 3만원 이내 (단, 보험심사 후 가입 결정)																
	영 유 아 양 육 수 당 (지역활력추진단)	가. <u>둘째아이 이상의</u>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u>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u> 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u>부 또는 모와 2명 이상 자녀</u> 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u>둘째아이 이상 자녀</u> 를 둔 사람	6세(생후 72개월) 미만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분야	세부 사업명 (소관부서)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전입 지원	전 입 자 지 원 금 (지역활력추진단)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사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2명 이상의 지원금은 동일 전입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 전입자를 기준으로 한다.)	• 1명 : 10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50만원 • 4명 이상 : 70만원
	전 입 학 생 지 원 금 (지역활력추진단)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자 중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50만원
	전 입 군 인 휴 가 비 (지역활력추진단)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군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군인 (전환 복무자 포함)	• 휴가비 : 최대 30만원 (휴가 1회당 15만원씩 2회 지급)
	기 업 체 근 로 자 전 입 지 원 금 (지역활력추진단)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 1인 30만원
	귀 농 문 화 예 술 인 창 작 지 원 금 (문 화 체 육 과)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1회 지원	• 전업 문화예술인 200만원 이내
	전 입 자 팸 투 어 (관 광 진 흥 과)	전입자지원금 지원대상 중 신청자	• 주요 시설물과 유적지, 관광지 등 현장 답사
	결 혼 식 장 무 료 대 여 (관 광 진 흥 과)	전입자지원금 지원대상 중 신청자	• 하동문화예술회관 이용 시 대관료 전액 감액

분야	세 부 사 업 명 (소 관 부 서)	지 원 기 준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결혼 장려	결 혼 장 려 금 (지역활력추진단)	- 신청일 기준 결혼당사자 1명 이상이 연속하여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입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 법시행령 제6조 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2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구분	1회	2회	3회
				금액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시기	신 청 일 로 부 터 익 월	첫 지 급 월 로 부 터 1년 뒤	첫 지 급 월 로 부 터 2년 뒤		
주거 지원	신 혼 부 부 대 출 이 자 지 원 (지역활력추진단)	가. 지원대상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거주 목적으로 하동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85㎡이하의 주택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 기관으로부터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 신청자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어야 함 - 대상주택 :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 나.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주택 거주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차한 경우 ·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하동군 및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 관련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주거자금 대출잔액의3% 이내 이자 (연 최대 3백만원 한도)			
				· 지원횟수: 분기별 지원 · 지원기간: 최장 3년			